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173
----------	-------

발의연월일 : 2025. 8. 14.

발 의 자 : 정혜경 · 전종덕 · 윤종오
용혜인 · 손 술 · 한창민
이용우 · 박해철 · 최혁진
김준형 · 이해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을 증권·의 매매나 대여를 통해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이른바 ‘책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러한 책임투자를 재량사항으로 하고 있고, 적용범위를 증권·의 매매나 대여를 통한 관리·운용 방법에만 국한시키는 한편, 목적을 안정적인 수익 증대로 귀결시키고 있어 책임투자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증권·의 매매 및 대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기준 및 방법을 기금운용지침으

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그 목적을 수익 증대가 아닌 기금의 공공성 확보로 규정함으로써 책임투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금의 관리·운용의 방향이 공공성 확보임을 명시함(안 제102조 제2항).

나. 기금의 관리·운용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ESG 등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에 대한 고려를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개정하고, 그 적용 대상을 증권의 매매 외에도 예입·신탁, 파생상품 운용, 집합투자업자 등으로 확대함(안 제102조제4항).

다. 제102조제4항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방법을 기금운용지침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여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105조제1항제6호 신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민연금”으로, “그 수익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를 “제103조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3호에”를 “제2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7호에”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을 “공공성 확보를”로, “고려할 수 있다”를 “고려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5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02조제4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 고려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u>고려할 수 있다.</u> ⑤·⑥ (생략)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① 운용위원회는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매년 다음 사항에 관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이하 “기금운용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 5. (생략) <u><신설></u> ② (생략)	----- -----<u>고려하여야 한다.</u> ⑤·⑥ (현행과 같음)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①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102조제4항에 따른 기금의 <u>관리·운용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 고려에 관한 기준 및 방법</u> ② (현행과 같음)
--	---